

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(규정 제18조제1항 관련)

구 분	관 리 기 준
1. 출결관리	<p>가.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른다.</p> <p>나.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%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다.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%를 결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% 처리한다.</p> <p>라.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. 다만, 총 출석일수의 40%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.</p> <p>마. 다목의 ‘타당한 결석의 경우’와 라목의 ‘부득이 한 경우’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.</p> <p>바.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토록 한다.</p> <p>사.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.</p>
2. 평가관리 (수료기준)	<p>가.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점수를 부여한다.</p> <p>나. 평가는 4지선다식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, 개인별 또는 조별 실습보고서에 의한 평가인 과제평가 및 근태평가로 이루어 진다.</p> <p>다.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60%, 과제평가 20%, 근태평가 20%로 하여 총 점수의 70%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. 다만, 이수 조건중 출석일수는 총수업일수의 80% 이상으로 한다.</p>
3. 설문조사	<p>가. 1주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효과,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.</p>